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8-2호

「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, 전문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8년 1월 12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우리 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고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권장하고,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지판 부착, 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 제공,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3조)
- 모유수유실 등 설치(안 제4조)
- 교육지원, 모유수유 홍보 등(안 제5조 ~ 제6조)
- 예산지원(안 제7조)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1. 12. ~ 1. 17.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jw1028@korea.kr

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
3) 팩스 : 061-749-477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순천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2. “영유아”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.
3. “모유수유실”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.
4. “모유착유실”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순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모유수유실 등 설치) ①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(이하 “모유수유실 등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도록 권장하고,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.

1. 순천시 본청 및 산하기관
2.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
3.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 등 각급학교
4.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
5. 우체국, 도서관 등 공공건물
6. 대형마트, 기차역,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
7. 종합병원,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
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②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신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임신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교육지원) 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모유수유 홍보 등) ①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·홍보·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,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산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·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,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.